

## 보급판 정정표

### 1.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제3권 제497면 “1. 개요” 이하 4행부터 6행까지

정정 전	정정 후
<p>민사조정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 판사나 수소법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민조 1조, 2조, 7조).</p>	<p>민사조정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 판사나 수소법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 위원회가 “조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민조 1조, 2조, 7조).</p>

### 2.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제3권 제525면 “(2) 피신청인의 불출석” 이하 1행부터 2행까지

정정 전	정정 후
<p>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조 32조).</p>	<p>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조 32조).</p>

### 3.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제3권 제532면 18행

정정 전	정정 후
<p>(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그 효력</p>	<p>(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효력</p>

### 4.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제3권 제532면 20행부터 ~ 29행까지

정정 전	정정 후
<p>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p>	<p>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p>

정정 전	정정 후
<p>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b>상당한 이유가 없으면</b>”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b>결정을 하여야 한다</b>”(민조 30조). 특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감정적인 대립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지엽적인 의견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관여로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등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b>결정을 하여야 한다.</b>”</p>	<p>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b>상당한 이유가 없으면</b>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b>결정을 할 수 있다</b>”(민조 30조). 특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감정적인 대립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지엽적인 의견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관여로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등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b>결정을 할 수 있다.</b>”</p>

5.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제3권 제533면 1행부터 ~ 5행까지

정정 전	정정 후
<p>또,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b>상당한 이유가 없으면</b>”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b>결정을 하여야 하고</b>”(민조 32조),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b>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b>”(조정예규 25조 3항 2호 참조).</p>	<p>또,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b>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b>”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b>결정을 할 수 있고</b>”(민조 32조),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b>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b>”(조정예규 25조 3항 2호 참조).</p>